

심사보고서

의안명	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
의안번호	제432호
심사일자	2026. 6. 15.



위원장 신영재 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

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432
------	-----

2026년 6월 15일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5. 28. 송파구청장
나. 회부일자: 2026. 6. 1.
다. 상정일자: 2026. 6. 15.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설명 요지 (이명아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: 취득(신축) 1건

(단위: m², 천원)

사업명	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	기준가격	용도	추진부서
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	건물	신천동 21외 3필지	764.15	3,900,000	주민공동이용시설	치수과

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성내천 수변공간 고도화

- 성내천은 산책과 운동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, 체류형 프로그램과 복합문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
-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수변거점 공간 조성 필요

○ 주민 여가·문화 수요 대응 필요

- 커뮤니티 활동과 야외 운동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, 옥상을 전망대로 조성하여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여가 공간 마련

□ 취득개요

- 사업목적: 성내천 수변활성화
- 용도: 주민공동이용시설
- 위치: 송파구 신천동 21외 3필지(22, 23, 24)
- 사업기간: '21. 2월 ~ '26. 12월
- 계약방법: 공개경쟁입찰
- 사업규모: <토지> 2,779 m^2 (시유지 무상사용)
<건물> 764.15 m^2 (지상3층)

층별	면적(m^2)	세부시설용도	비고
	764.15		가설건축물
지상1층	12.49	장애인 엘리베이터(면적산정 제외)	
지상2층	481.4	주민공동이용시설, 카페	
지상3층	282.75	주민공동이용시설	

- 기준가격: 3,900,000천원

○ 소요예산: 3,900,000천원(시비), 일반회계

(단위: 천원)

구 분		계	2024년	2025년	2026년
재원별	계	3,900,000		200,000	3,700,000
	공 사	3,700,000			3,700,000
	용 역	200,000		200,000	
재원조달	계	3,900,000		200,000	3,700,000
	시비	3,900,000		200,000	3,700,000

추진근거

-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추진계획(구청장 방침 제45호, '23.03.13.)
-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('25.02.27.)

추진경위

- '23.02.21. :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립(市 수변감성도시과)
- '25.02.27. :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수립
- '25.04.18. : 착수
- '25.06.18. : 착수 보고회
- '25.07.21. : 중간 보고회
- '25.07.30. : 주민설명회
- '26.01.02. : 최종 보고
- '26.04.02. :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(심의결과: 원안가결)
- '26.04.15. :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

재산취득 내용

구 분	재산의 표시	면적(m ²)	기준가격(천원)	취득사유
건물 신축	신천동 21외 3필지 (22,23,24)	764.15	3,900,000	성내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

기대효과

○ 도시경관 및 지역명소화

- 성내천 수변공간을 매력적인 경관과 특화된 콘텐츠를 갖춘 거점으로 조성하고,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 명소로 발전

○ 여가 문화의 중심 공간 마련

- 성내천 수변활력거점이 조성되면 주민들은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휴식, 산책, 운동, 문화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○ 주민의 소통 강화

- 수변공간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,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 간 소통 및 교류를 촉진하고,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

향후계획

- '26.06. : 공사발주 및 착공
- '26.12. : 준공 및 개관

사업비 산출내역

구 분		산출기초	금 액(천원)
총 계		①+②	3,900,000
공사비		소 계(①)	3,700,000
	건축비	건축물 신축 1식	3,508,380
		- 건축공사	(2,943,816)
		- 조경공사	(254,735)
		- 토목공사	(158,788)
		- 기계공사	(151,041)
이설비	이설비 및 기타공사 1식	191,620	
용역비		소 계(②)	200,000
	설계 용역	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	200,00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진미숙)

-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
 -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
의안번호 제43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,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1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1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, 본 취득의 건은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며,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재산취득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m ²)	기준가격(천원)	취득사유
건물 신축	신천동 21외 3필지 (22,23,24)	764.15	3,900,000	성내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

-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·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(요지)

【질의】 김성호 위원

- 한강이 보이는지?

【답변】 강대양 치수과장

- 전망대는 옥상 3층이라 한강이 보임.

【질의】 신영재 위원

- 제방 위에 신축하는데,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?

【답변】 강대양 치수과장

- 제방 안전성에 대하여 서울수자원위원회까지 거쳐 논의·통과한 사항임.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